

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10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9. 21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0. 16

(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

나. 개정사유

-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보완 개정키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8조(사용료의 반환)에 “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미사용 신고를 할 때 기 납부액을 반환(단, 시설 사용중에는 반환하지 않음)” 규정을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군민회관의 사용료를 납부한후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, 1일 이전에 신고하면 사용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,
- 군민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 생각되며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미사용 신고를할 때(단, 시설 사용중에는 반환하지 않음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1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</p> <p>2. 사용예정 5일전에 계약 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(신 설)</p>	<p>제8조(사용료의 반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 <p>3. <u>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미사용 신고를 할 때(단, 시설 사용중에는 반환하지 않음)</u></p>